

새로운 정의의 공동자원론에 대한 몇 가지 물음들

박서현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I. 본 발표의 의의

엘리너 오스트롬이 1990년에 출간한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국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공동 자원에 대한 오스트롬의 경험적 조사와 이론적 종합의 결과물이었다. 이 책에서 오스트롬은 연구대상을 공동관리자원(CPRs)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는데, 공동관리자원은 경제학적 의미의 자원의 네 유형 중 하나로서 배제불가능성과 감소성이 모두 높은 자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오스트롬이 공동관리자원을 자원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서 분류한 것과 달리 본 발표에서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속성을 중심으로 자원을 분류해야 되는 필요와 이유를 제주의 사례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관리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안을 제공하는 본 발표는 공동자원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I. 새로운 정의에 입각한 공동자원 제도의 특징에 대한 물음

누군가가 그것을 독점할 경우 잠재적 이용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과 같은, 자원의 사회적 속성에 입각한 공동자원의 정의는 공동자원을 지키고 되찾는 사회운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각해볼 것은 공동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자원과 분명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자원으로만은 환원되지 않는 제도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과제로 남기지 않는가하는 점이다. 본래 오스트롬은 공동관리자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자치 제도들의 유사점들을 8개의 디자인 원리로 정리했다. 달리 말해, 오스트롬은 연구대상으로서의 자원은 공동관리자원에 한정하고 자원을 둘러싼 제도의 차원을 자원과 분리해 연구했다. 공동자원에 대한 사회적 속성에 입각한 정의는 자원 자체의 물리적 속성이 아닌 자원과 인간의 관계 및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자원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이미 제도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의에 입각한 공동자원의 제도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새로운 정의에 입각한 공동자원을 지키고 되찾기 위한 제도 혹은 새로운 정의에 입각한 공동자원의 제도화는 8개의 디자인 원리를 변경하거나 이 원리와는 구분되는 어떤 다른 특징

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III. 독점부당성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

공동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 배제불가능성 대신 사회적 속성인 독점부당성을 어떤 자원을 공동관리자원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다. 어떤 자원을 독점할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 즉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누군가가 독점할 경우 잠재적 이용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해당 자원을 독점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하나 아니냐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 없이 해당 자원에 대한 독점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자원의 독점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나 아니냐는 다시금 사회적 논의, 공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원의 독점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식을 공동자원으로 되찾으려하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지키고 되찾는 사회운동이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원에만 한정된 운동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자원의 독점을 부당한 것으로 만드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

IV. 커머닝을 중심으로 공동자원 혹은 커먼즈를 이해하는 입장과의 차이에 대한 물음

공동자원을 되찾는 사회운동은 사라진 공동자원 혹은 더 이상 공동자원이 아닌 공동자원을 다시금 공동자원으로 만드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볼 것은 이러한 운동의 경우 공동‘자원’을 전제한다거나 공동‘자원’을 자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공동자원을 인간의 실천을 통해 생산되는 실천의존적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자원을 함께 사용하고자 사람들의 집합적 활동이 해당 자원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자원의 자원적 성격보다는 사람들의 집합적 활동이 공동자원에 대한 이해에서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자원이 자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주체와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체와 활동을 아우르는 일종의 체계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 자원을 둘러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자원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공동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공동자원을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입장과 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자원 혹은 커먼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는 본 발표가 특히 커먼즈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커머닝을 중심으로 공동자원을 이해하는 입장과 구분되는 지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

V. 독점부당성과 공공성의 민주적 구성 혹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생산의 접목에 대한 물음

마지막으로, 어떤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독점부당성을 공공성의 문제 혹은 공공성의 민주적 구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자원의 독점이 부당하기 때문에 독점을 국가가 나서서 공적으로 규제하거나 해당 자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그 자원을 마을 주민과 같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나 시민들이 공동으로 생산·관리·공유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되찾는 문제는 해당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생산·관리·공유하는 체도를 만드는 과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 안에 구축된 절차를 따르면 되는 공적 규제나 공적 공급과 달리 어떤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지키고 공동자원으로 되찾는 문제가 해당 자원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독점부당성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공동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자원의 물리적 속성이 아닌 자원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주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회적 생산의 영역과 결부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결부의 가능성은 새로운 정의에 입각한 공동자원론이 가지는 이점이자 나아가 보다 더 전개될 필요가 있는 논점이지는 않을까?